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5. . .

의 결 사 항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 서(안)

.

제안연월일	2025. . .
제 안 자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목 차

Ⅰ.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 1

1. 활동목적
2. 구성근거
3. 추진경위
4. 활동기간

Ⅱ. 특별위원회 구성 ····· 2

Ⅲ. 주요활동계획 ····· 3

1. 활동방향
2. 활동방법
3. 세부활동 일정(안)

Ⅳ. 행정사항 ····· 5

1. 의회사무국 부서별 협조사항
2. 소요예산

Ⅴ. 기타 참고 사항 ····· 5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 서(안)

Ⅰ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1. 활동목적

○ 구미시는 1969년 국가 제1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로 50년 이상이 지났으며 현재 제5단지까지 지정되었으나 제1산단은 노후산단으로 불리고 있음. 이러한 지난 세월을 뒤로 하며 다시금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문화산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문화·산업 융복합형 문화산단으로 재탄생하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 노후된 산단과 더불어 쇠퇴한 도심에 활기를 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들도 구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임.

○ 향후 구미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한 구미시의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그에 따른 방향설정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 구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3. 추진 경위

○ ‘25. 7.11.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김춘남의원 외 15명)

○ ‘25. 7.16.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 ‘25. 7.24. :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및 위원선임

○ ‘25. 7.24. : 제1차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위원장(김춘남) 및 간사(정지원) 선임

4.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Ⅱ 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 춘 남	산업건설위원회	
	간 사	정 지 원	〃	
	위 원	김 근 한	기획행정위원회	
		김 민 성	〃	
		김 영 길	문화환경위원회	
		김 영 태	〃	
		김 원 섭	산업건설위원회	
		이 명 희	기획행정위원회	
		이 정 희	문화환경위원회	
사무보조	전 문 위 원	임 호 규	전문위원실(산업)	도시재생 문화산단 관련
		김 명 화		
	주 무 관	김 채 린		
	〃	장 종 원	전문위원실(문화)	취수원 관련
	〃	이 학 제		
	속 기 사	신 서 준	의사팀	

Ⅲ 주요활동계획

1. 활동방향

○ **문화산단 조성 관련 현황 청취 및 방향 제시**

- 집행기관 사업계획 등 현황 청취
- 문화산단 조성 관련 추진 상황 수시 점검 및 방향 제시

○ **관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 집행기관 사업 현황 및 결과보고 등 청취
- 도시재생사업 효과 극대화 방안 논의

○ **취수원 관련 이슈 발생 시 대응 방안 논의**

2. 활동방법

○ **(위원회 회의)** 4회 ※ 사안 발생시 수시 개최

- 집행부 업무현황 청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 위원회 운영 협의 등

○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1회 ※ 필요 수시 개최

- 위원회 운영 관련 협의 필요시, 위원장의 필요 판단시

○ **(현장 방문 및 타 시군 비교견학)** 2회 ※ 필요시 방문 횟수조정

- 각종 도시재생사업 및 문화산단 현장 방문, 의견수렴 등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전까지

- 주요활동내역, 수범사례 및 언론보도내용, 운영성과 등

3. 세부활동 일정(안)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용	주관부서	비 고
2025. 8월중	○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비회기) - 자료수집, 특위활동계획서 작성 등	전문위원실	
2025. 9월중	○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특위활동계획서 의결 집행기관 현황 청취 등	전문위원실 (관련부서)	
2025. 10월중	○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집행기관 현황 청취, 개선대안 마련 토론 등	전문위원실 (관련부서)	
2025. 11월중	○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 특위 위원, 관련부서 공무원 등	전문위원실 (관련부서)	
2025. 12월중	○ **특별위원회 간담회** - 관외 비교견학지 선정	전문위원실	
2026. 1월중	○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비회기) - 집행기관 현황 청취, 개선대안 마련 토론 등	전문위원실 (관련부서)	
2026. 2월중	○ **관외 비교견학** - 문화공간, 거리 경관 등 비교견학	전문위원실 (관련부서)	
2026. 3월중	○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집행기관 현황 청취, 개선대안 마련 토론 등	전문위원실 (관련부서)	
2026. 4월중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본회의) - 특위 위원, 공무원 등	전문위원실 (관련부서)	위원장 심사 보고

※ 의회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1. 의회사무국 부서별 협조사항

○ 의정팀 :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소요예산 지원

○ 의사팀 : 속기 및 기록관리 지원

○ 홍보팀 : 언론기관 홍보, 활동사진 촬영

○ 정책지원팀 : 의정활동 자료 수집

2. 소요예산

○ 특별위원회 활동경비(간담회, 토론회 등), 기타 필요 경비 등은 의회의 예산 범위와 지급 기준에 따름

Ⅴ 기타 참고 사항

○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별도 자료 첨부

○ **관계공무원 출석 협조**

- 특별위원회 회의 시(회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협조

○ **자료제출 요구 협조**

- 특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별첨]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춘남 의원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 .
발 의 자 : 김춘남
찬 성 자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소진혁· 양진오·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의원(15명)

1. 제안이유

최근 대구시와 정부에서 안동댐뿐만 아니라 우리시 해평취수장에 대한 물공급을 다시 검토하는 등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지난 3월 중앙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노후 산단을 미래 50년을 열어갈 문화·산업 융복합형 문화산단으로 재탄생하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 이와 함께 도시재생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공단과 도시를 아우르는 재생사업도 활발히 추진중에 있음. 이처럼 향후 구미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한 우리시의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그에 따른 방향설정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 내　　용

가. 구성인원: 9명(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7명)

나. 존속기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다. 활동내용

○ 우리시 해평취수원 활용 방안

○ 해평취수원 사용에 따른 우리시 대응과 정부·대구시와의 협력 방안

○ 문화선도산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 문화선도산단 추진에 따른 효과 극대화 방안

○ 도시 및 공단 등 재생 사업의 활성화 방안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나.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